장성군의회 공고 제2020-16호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범위(안 제4조)

○ 예우 및 홍보(안 제5조)

○ 우대(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병역법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0. 8. 26. ~ 8. 31.(6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